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
(김준혁의원 대표발의)

|          |       |
|----------|-------|
| 의안<br>번호 | 18386 |
|----------|-------|

발의연월일 : 2026. 4. 16.

발 의 자 : 김준혁 · 박정현 · 윤준병  
남인순 · 김동아 · 박희승  
추미애 · 부승찬 · 김문수  
이성윤 · 황명선 · 안태준  
염태영 · 최혁진 · 서미화  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보상 등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 소속으로 보훈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독립유공자의 사진을 활용하여 생성된 독립유공자 비방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었음에도, 해당 정보의 삭제, 접속차단 등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여 확산됨에 따라 삭제 또는 접속차단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국가보훈부장관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독립유공자를 비방하는 정보의 삭제, 접속차단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, 현행법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·의결 사항에 독립유공자 비방 정보 삭제 등 요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려는 것임(안 제74조의5제1항제14호의2 신

설 등).

#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준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8385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,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##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보상 등에”를 “보상, 예우 등에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4의2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의3에 따른 독립유공자 비방 정보 삭제 등 요청에 관한 사항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